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8
----------	------

제출연월일: 2025. 12. 5.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본청 실과 사무분장표에 따른 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 업무 조정사항 반영(안 제12조제5항)

- (현행) 예산계장
-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계장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17조(시행규칙) 삭제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0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42565(2025. 10. 30.)호

라. 입법예고: 2025. 10. 20. ~ 2025. 11. 10.(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하여야”를 “규정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산계장”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제7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4조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가능한 5일 전에 위원들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예산계장</u>이 된다.</p> <p>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 후, 구 예산담당부서에 <u>제출하여야</u> 한다.</p>	<p>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통보해야</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계장</u>-----.</p> <p>⑥ ----- ----- ----- <u>제출해야</u> ----.</p>
<p>제13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p> <p>1. ~ 6. (생략)</p> <p>7.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u>아니하도록</u>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p>	<p>제13조(위원회 운영원칙)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않도록</u> ----- ----- -----</p>

현행	개정안
<p>제14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u>공개하여야</u> 한다.</p> <p><u>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4조(결과 공개) ----- ----- ----- ----- 공 개해야 -----.</p> <p><u><삭 제></u></p>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0조(부서의 분장사무)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본청 실·과 사무분장표(제10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시설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천만원 이상(부가세 별도) 시설직(토목, 건축)이 없는 부서의 공사(설계, 심사, 감독, 준공) 관련 업무, 다만 사업관련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행정적 절차는 소관부서에서 추진 한다. 2. 문화유산, 대형 체육시설물 공사관련 업무 3. 제1호, 제2호의 공사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추진, 다만 준공 후 운영 관리에 따른 공사는 소관부서에서 한다. 4. 시설직(토목, 건축)이 없는 부서로부터 임명을 요구하는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기본계획에 의한 민원 발생, 공사 추진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공사관련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지시사항 7. 소관부서는 시설지원과로 공사(용역) 의뢰시 별지 서식에 의거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의뢰하고, 시설지원과는 공사(용역) 준공 후 소관부서로 시설물 및 서류 이관 시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절차에 준용하여 이관한다.
총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국내 타과 및 전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의전, 보안,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국외 교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인사, 보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교육훈련, 포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비정규직 포함)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채용, 보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 행정 지도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 사무 4.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6. 구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관리 및 자치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 8. 견문보고제에 관한 사항 9. 척척 중구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 예산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 등본·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2. 민원사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5.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6.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
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조정 사항 반영 등 현행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
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자치행정과
- 직 급: 지방행정서기
- 성 명: 강다경
- 연락처: (052)290-3253